

대만 비관세장벽 이슈

Taiwan Non Tariff Barriers Issue

대만, 조제분유 등 조제유류 식품에 첨가되는 L-시스틴의 함유량 기준 마련



L-Cystine 사용 범위 및 함유량 기준 변경, 조제유류 수출 시 성분 기준 주의 필요

대만 위생복지부(衛生福利部) 식품약품관리서(食品藥物管理署)는 식품첨가물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, 《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, 함유량 및 규격 표준(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)》 제2조 별표1 L-시스틴(L-Cystine/L-胱胺酸)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함

이번 수정안에 따라 L-시스틴의 사용범위 및 함유량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

※ 식품첨가물 L-시스틴 주요 변경 사항

L-시스틴(L-Cystine/L-胱胺酸)		
구분	사용범위 및 함유량	사용 제한
수정 전	- 특수영양식품에서는 실제 수요에 따라 적당량을 사용할 수 있음	식품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때 사용
수정 후	1. 1일 허용섭취량이 표기된 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, 1일 섭취량 중 L-시스틴은 500mg 초과할 수 없음(신규) 2. 특수영양식품에서는 실제 수요에 따라 적당량을 사용할 수 있음	(삭제)

한국에서 L-시스틴은 특수영양식품에 해당하는 조제유류 식품(원유 또는 유가공품 기반의 영아용 조제식품, 성장기용 조제식품 등)에 아미노산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함유량에 대한 별도 사용 기준은 없음. 대만은 이번 수정안에 따라 L-시스틴에 대한 함유량 기준(500mg 미만)이 마련되었으므로, 한국에서 대만으로 조제유류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본 수정안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

출처

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, 發布修正「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」第二條附表一(胱胺酸), 2022, 08, 02.
식품의약품안전처, 식품공전